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양식 제7호]

[様式第7号]

<div> 친양자파양신고서 特別養子離縁届 (년 월 일) (年 月 日) </div>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届出書は、下記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구분 区分		양부 養父						양모 養母											
① 양친 ① 養親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명)	본(한자) 本貫 (漢字)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 기준지 登録 基準地																		
	주소 住所																		
② 친양자 ② 特別養子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종전의 성(姓) 従前の氏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종전의 본(本) 従前の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부활된 성(姓) 戻された氏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부활된 본(本) 戻された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③부활되는 (양)부모 ③戻される (養)父母	(양)부 (養)父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양)모 (養)母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④기타 사항 ④その他の事項					
⑤재판확정일자 ⑤裁判確定日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裁判所の 名称	
⑥신고인 ⑥届出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자격 資格	(1)소 제기자 (2)소의 상대방 (3)기타(자격:) (1)提訴者 (2)訴訟の相手 (3)その他 (資格:)			
	주소 住所				
	전화 電話番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⑦제출인 ⑦提出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작성방법 作成方法

-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 この届出書は「民法」第908条の5に基づく特別養子離縁の裁判又は「養子縁組特例法」第17条に基づく離縁の裁判が確定し、特別養子離縁届をする場合に記入してください。
-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①란 및 ②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欄①及び欄②: 法第25条第2項に基づき、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た場合は、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③란: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欄③: 特別養子縁組の前に普通養子縁組が成立している場合、特別養子離縁の際に従前の普通養子縁組をした養父母関係が復活します。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欄④: 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⑥란: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欄⑥: 特別養子離縁の裁判が確定した場合は、提訴者又は訴訟の相手が単独で届け出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場合は、該当項目の番号に「○」をつけ署名又は捺印します。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欄⑦: 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첨부서류

添付書類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 以下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情報システム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てください。

-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特別養子離縁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 各1通
-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特別養子離縁裁判の謄本及び確定証明書 各1通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提出者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4項の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